

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1. 입소정원

살롬하우스요양원의 입소정원은 29인으로 한다.

단, 입소자의 장기입원 등으로 외박자가 발생한 경우,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 부터 외박자를 대신하여 다른 수급자(특례입소자)를 입소시킬 수 있다. 다만 외박자의 복귀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특례입소자의 입소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또는 입소계약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는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2. 입소대상자

- 1) 장기요양등급 1-5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시설 입소 대상자
- 2) 등급외자로서 본인부담 전액 대상자

3. 모집방법

시설 입소자 모집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.

- 1)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시설의 장점이 홍보되도록 노력한다.
- 2) 시설 내부, 주변 환경, 위치,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안내를 담은 전단지를 제작하여 배포
- 3) 입소자 가족, 지인, 교회 성도들을 통한 소개
- 4) 유선 문의, 시설 직접방문,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한 안내

4. 입소절차

- 1) 초기면접: 사회복지사와 간호사, 요양팀장은 초기면접 시 노인과 그 가족을 면담하여 노인의 건강상태를 파악한다. 특히 치매와 보유 질환의 정도가 시설생활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하여 입소를 결정한다.
- 2) 입소계약: 입소가 결정된 노인은 시설장과 신원인수인 간에 입소계약을 체결한다.
- 3) 입소 및 생활 안내: 입소계약이 체결되면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,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및 입소 생활에 대해 안내한다.

5. 구비서류 및 개인정보보호

1) 시설에 입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작성,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①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
- ② 사진 1매
- ③ 입소 이용 의뢰서(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)
- ④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
- ⑤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
- ⑥ 입소자 건강진단서 또는 병적기록자료 (감염병 진단서 포함)
- ⑦ 코로나검사 결과지

2) 입소자(보호자)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 수 있도록 입소자(보호자) 개인정보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.

- ① 입소자(보호자)에게 개인정보 수집·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을 것
- ②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것(연 1회 이상)
- ③ 기관 내부에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비치할 것
- ④ 개인정보 보관함에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

6. 입소계약

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- 1) 계약목적 :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,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,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2) 계약대상자 :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(보호자)도 가능하다.
- 3) 계약기간 : 장기요양 1~5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.
- 4) 입소기간의 연장 : 급여제공 계약서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.
- 5) 계약서 : 급여제공계약서(표준약관)에는 계약 당사자명, 계약기간, 장기요양급여의 종류, 내용, 입소비용과 비급여 대상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6) 계약서 부분 발부 : 급여제공계약서(표준약관)는 반드시 부분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고 급여제공계약서(표준약관) 부분 발부 대장에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.

7.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

- 1)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급여비용 및 비급여 비용에 준하며,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(표준약관)를 통하여 명기한다.
- 2) 장기요양 등급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
- 3) 시설의 이용료는 아래 항목과 같다.

2023년 요양급여비 세부내역 (30일기준)

구 분			일반(20%)	감경60 (8%)	감경40 (12%)	내 역
1 등급	총 계		2,749,500	2,749,500	2,749,500	
	요양보험 부담비용	소 계	1,962,000	2,256,300	2,158,200	요양급여 81,750X30=2,452,500
		요양급여비용	1,962,000	2,256,300	2,158,200	식 대 9,900X30= 297,000
	개인 부담비용	소 계	787,500	493,200	591,300	-----
		요양급여비용	490,500	196,200	294,300	계 2,749,500
		식재료/간식비	297,000	297,000	297,000	
		상급침실 이용료				
2 등급	총 계		2,572,200	2,572,200	2,572,200	
	요양보험 부담비용	소 계	1,820,160	2,093,180	2,002,180	요양급여 75,840X30=2,275,200
		요양급여비용	1,820,160	2,093,180	2,002,180	식 대 9,900X30= 297,000
	개인 부담비용	소 계	752,040	479,020	570,020	-----
		요양급여비용	455,040	182,020	273,020	계 2,572,200
		식재료/간식비	297,000	297,000	297,000	
		상급침실 이용료				
3 ~ 5 등급	총 계		2,445,600	2,445,600	2,445,600	
	요양보험 부담비용	소 계	1,718,880	1,976,710	1,890,770	요양급여 71,620X30=2,148,600
		요양급여비용	1,718,880	1,976,710	1,890,770	식 대 9,900X30= 297,000
	개인 부담비용	소 계	726,720	468,890	554,830	-----
		요양급여비용	429,720	171,890	257,830	계 2,445,600
		식재료/간식비	297,000	297,000	297,000	
		상급침실 이용료				

■ 비급여항목(단위:원)

비급여항목		1일 단가	30일	31일
식재료비(간식비 포함)		1식 3,300원 * 3회 = 9,900원	297,000	306,900
상급병실료	1인실	5,000	150,000	155,000
	2인실	3,000	90,000	93,000

♣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0%